

등록번호	건설산업과-1930
등록일자	2020. 03. 06
결재일자	2020. 03. 06
공개구분	비공개(5)

주무관	행정사무관	건설산업과장	건설정책국장
어영진	김학원	최임락	2020. 3. 6. 이성해
협조자	규제개혁법무담당관		윤종수

<h2>건설업 관리규정(예규) 개정 추진(안)</h2>	주요 검토사항	
	정 책 중 요 도	보통
	민원 · 갈등 가능성	보통
	기관간 이견가능성	낮음
	홍보대책 필요성 (홈페이지 등록 필요성)	보통
	서민생활 관련성	보통

- ◆ **합병회사의 납입자본금은 일정기간 증자기회를 부여하고, 실질 자본금 인정범위를 일부 확대,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**
- (현행) 유권해석으로 합병회사 납입자본금 증자기회 부여  
→(개선) 예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
  - (현행) 건물에 대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  
→(개선) 건물 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도 실질자산으로 인정
  - 시설원예기술사(기사) 및 잠수기능장의 기술능력 인정
  - 기타 예규규정을 대통령령에 반영한 사항은 예규에서 삭제하고, 실태조사의 조사일 명확화, 용어 정비 등

2020. 3.

# 건 설 정 책 국 (건설산업과)

붙임 : 세부 개정추진(안)